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외경 3.80밀리미터(mm) 이상 28.58밀리미터(mm) 이하인 것
2. 두께 0.20밀리미터(mm) 이상 2.00밀리미터(mm) 이하인 것으로 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함
3. 길이 50미터(m) 이상인 것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중국	1.금룡신상[Golden Dragon Precise Copper Tube (Xinxiang)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금룡그룹(Golden Dragon Precise Copper Tube Group Inc.) 나. 상하이롱양(Shanghai Longyang Precise Compound Copper Tube Co., Ltd.) 다. 장수강후안(Jiangsu Canghuan Copper Products Co., Ltd.) 라. 광동룽펑(Guangdong Longfeng Precise Copper Tube Co., Ltd.) 마. 롱커우룽펑(Longkou Longpeng Precise Copper Tube Co., Ltd.) 바. 충칭룽유(Chongqing Longyu Precision Copper Tube Co., Ltd.) 사. 허난룽휘(Henan Longhui Copper Industry Co., Ltd.)	18.12
	2. 닝보진티엔(Ningbo Jintian Copper Tube Co., Ltd.)과 그 관계사인 장수싱룽(Jiangsu Xingrong Copper Co., Ltd.)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8.12
	3. 상하이하이량(Shanghai Hailiang Copper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광동하이량(Guangdong Hailiang Copper Industry Co., Ltd.) 나. 하이량안휘[Hailiang (Anhui) Copper Co., Ltd.] 다. 하이량올탑[Hailiang Alltop Tube (Guangdong) Ltd.] 라. 저장하이량(Zhejiang Hailiang Co., Ltd.) 마. 충칭하이량(Chongqing Hailiang Copper Industry Co., Ltd.)	16.52
	4. 그 밖의 공급자	18.12
베트남	5. 진티엔베트남[Jintian Copper Industrial (Vietnam) Company Limite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9.98
	6. 하이량베트남[Hailiang (Vietnam) Copper Manufacturing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4.78
	7. 그 밖의 공급자	11.63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 1 호 · 제 2 호 · 제 3 호 · 제 5 호 또는 제 6 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제 4 호 또는 제 7 호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 1 호 · 제 2 호 · 제 3 호 · 제 5 호 또는 제 6 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